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용카드 등으로 기숙사비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03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생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2
2.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7
참고자료. 국·공립대학 기숙사비 신용카드 납부 현황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21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3.
3. 회부연월일 : 2025. 3.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2%인 51곳이 카드납부가 가능했고 31%인 78곳은 현금 분할납부 가능했으며, 59.9%인 151곳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음. 이처럼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생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은 학생이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1조의2(학생 기숙사비 납부 및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에 대하여 학생이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1. 현금</u> <u>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u> <u>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비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등록금에 대하여 카드에 의한 결제방식 및 분할 납부 등 납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¹⁾,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법령은 기숙사비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경우 조사대상 252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51개(20.2%),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8개(31.0%),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1개(59.9%)로 나타났고,

전문대학의 경우 조사대상 121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7%),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15.7%),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94개(77.7%)로 나타났는바,

대학 기숙사의 경우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1)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자료기준일 : '24.4.1

(단위 : 개, %)

구분		2024											
		기숙사 수				카드납부 실시				현금분할납부 실시			
		직영	민자	행복 기숙사	계	직영	민자	행복 기숙사	계	직영	민자	행복 기숙사	계
전체(193개교)		184	45	23	252	30 16.3	20 44.4	1 4.3	51 20.2	47 25.5	24 53.3	7 30.4	78 31.0
설 립	국공립 (39개교)	38	31	1	70	20 52.6	17 54.8	1 100.0	38 54.3	18 47.4	17 54.8	1 100.0	36 51.4
	사립 (154개교)	146	14	22	182	10 6.8	3 21.4	0 0.0	13 7.1	29 19.9	7 50.0	6 27.3	42 23.1
소 재 지	수도권 (73개교)	70	16	10	96	8 11.4	3 18.8	0 0.0	11 11.5	19 27.1	8 50.0	3 30.0	30 31.3
	비수도권 (120개교)	114	29	13	156	22 19.3	17 58.6	1 7.7	40 25.6	28 24.6	16 55.2	4 30.8	48 30.8
대 학 유 형	일반대학 (183개교)	174	38	23	235	27 15.5	19 50.0	1 4.3	47 20.0	44 25.3	21 55.3	7 30.4	72 30.6
	교육대학 (10개교)	10	7	0	17	3 30.0	1 14.3	0 0.0	4 23.5	3 30.0	3 42.9	0 0.0	6 35.3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 발표, 2024.10.30.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전문대학)>

◆자료기준일 : '24.4.1

(단위 : 개, %)

구분		2024											
		기숙사 수				카드납부 실시				현금분할납부 실시			
		직영	민자	행복 기숙사	계	직영	민자	행복 기숙사	계	직영	민자	행복 기숙사	계
전체(130개교)		109	2	10	121	11 10.1	1 50.0	1 10.0	13 10.7	17 15.6	1 50.0	1 10.0	19 15.7
설 립	공립 (7개교)	7	0	0	7	1 14.3	0 0.0	0 0.0	1 14.3	3 42.9	0 0.0	0 0.0	3 42.9
	사립 (123개교)	102	2	10	114	10 9.8	1 50.0	1 10.0	12 10.5	14 13.7	1 50.0	1 10.0	16 14.0
소 재 지	수도권 (42개교)	27	2	0	29	3 11.1	1 50.0	0 0.0	4 13.8	6 22.2	1 50.0	0 0.0	7 24.1
	비수도권 (88개교)	82	0	10	92	8 9.8	0 0.0	1 10.0	9 9.8	11 13.4	0 0.0	1 10.0	12 13.0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 발표, 2024.10.30.

기숙사비를 현금 외에 카드 방식(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으로 납부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납부의 편의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도 이와 같은 취지로 보임.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의 월평균 기숙사비는 대학의 설립구분, 기숙사 1개실 당 수용인원, 직영·민자 등 운영형태 등에 따라 15만원에서 53만원 내외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통상 한 학기 기숙사 거주기간이 4개월임을 감안할 때 다수의 기숙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금 일시납 결제방식의 경우 한 번에 결제해야 하는 기숙사비는 최고 20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는 실정인바,

카드 납부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기숙사비 납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4년 대학 월평균 기숙사비 현황 >

(2024.4.1.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월평균 기숙사비											
	직영				민자				임차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대학	335.5	230.7	198.1	185.3	339.3	237.6	251.7	222.2	356.0	307.3	—	288.7
국립	255.8	179.5	179.8	188.9	301.0	207.9	205.7	195.1	312.9	244.5	—	—
공립	253.8	176.0	155.4	—	—	—	—	—	—	—	—	—
사립	360.6	246.8	200.4	184.7	538.8	359.2	297.7	267.4	363.1	311.5	—	288.7

주) 대학(전문대학 제외) 내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행복기숙사(사립형)는 제외된 수치임

교육부는 평균 1.5%에 달하는 카드결제수수료²⁾ 부담으로 인하여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할납부가 가능해질 경우 수납·환불 및 퇴사 처리 등을 위하여 행정력 및 관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³⁾.

2)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은 2.6%에 달하였음.

3) 여러 대학들도 카드 수수료 발생으로 인한 기숙사비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분할납부를 실시할 경우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잔여 기숙사비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분할납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출하였음.

2.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학에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 등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3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1조의2(학생 기숙사비 납부 및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u> <u>③ 학교는 학생 기숙사비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이하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u>1. 학생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u> <u>2. 학생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u> <u>3. 학생 기숙사비 관련 불만 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학생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④ <u>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u> ⑤ <u>그 밖에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u>
제11조의2(평가 등) (생략)	제11조의3(평가 등)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생략)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대학에 학생 위원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는 등록금의 책정 및 면제, 감액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음⁴⁾.

4)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⑧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기숙사비의 경우 책정 등을 위하여 학생 위원이 포함된 산정위원회 구성이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학생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기숙사비의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학생들의 의견이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도 이와 같은 취지로 보임.

교육부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숙사비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현재 학교별로 다양하게 구성·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7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국 · 공립대학 기숙사비 신용카드 납부 현황

연 번	대학명	수용가능 인원(명)	2024학년도 1학기 카드납부 현황					
			카드납부 수입(원)	카드납부 인원(명)	이용비율 (%)	수수료 (원)	수수료 비율(%)	이용 카드사
1	강원대학교	7,000	27,770,000	52	0.7	467,490	1.7	신한, 농협
2	경북대학교	5,210	6,144,650	7	0.1	30,722	0.5	비씨
3	경상국립대학교	4,786	358,866,310	303	6.3	8,253,176	2.3	롯데, 농협, 국민, 삼성, 하나sk, 비씨, 현대, 신한
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2,442	138,383,100	114	4.7	1,922,910	1.4	현대
5	국립공주대학교	4,115	185,745,280	135	3.3	2,321,740	1.2	농협
6	국립부경대학교	1,070	107,777,900	107	10	2,854,225	2.6	우리, 비씨
7	국립순천대학교	1,824	50,082,270	37	2.0	774,570	1.5	농협, BC
8	국립창원대학교	1,920	377,008,480	389	20.3	5,679,890	1.5	삼성
9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926	98,498,100	77	4.0	1,735,119	1.8	농협, 현대
10	국립한국해양대학교	1,119	100,976,140	84	7.5	1,329,160	1.3	삼성, 농협
11	부산대학교	5,155	147,661,070	106	2.1	2,493,160	1.7	농협
12	서울교육대학교	888	236,988,000	227	25.6	3,554,820	1.5	삼성
13	인천대학교	922	55,680,000	78	8.5	839,046	1.5	삼성
14	전남대학교	4,977	17,760,550	14	0.3	233,941	1.3	비씨(광주)
15	전북대학교	5,788	11,187,960	11	0.2	170,863	1.5	전북은행
16	진주교육대학교	390	107,325,600	57	14.6	1,323,270	1.2	신한
17	청주교육대학교	463	75,227,640	39	8.4	1,050,887	1.4	삼성
18	충남대학교	3,067	1,844,390,060	1,196	39	45,642,060	2.5	하나, 우리, 신한, 국민
19	충북대학교	3,953	818,453,700	606	15.3	13,921,160	1.7	삼성, 현대, 농협
20	한경국립대학교	1,527	128,027,140	88	5.8	1,750,008	1.4	신한, 농협
21	한국교원대학교	2,505	75,466,200	56	2.2	377,330	0.5	현대, 농협
	계	61,047	4,969,420,150	3,783	6.2	96,725,547	1.9	